

###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건설 ○○시 ○○구 ○○로 ○○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00. 1. 5.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1. 5. 30. 징계해직 된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회사의 경리과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원고회사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01. 3. 5. 원고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에서 지급한 금 10,000,000원을 회사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 개인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같은 해 4. 10. 자로 징계해직 된 사람인바, 횡령을 하여 원고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횡령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2호증 입금표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주식회사〇〇건설

대표이사 〇〇〇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급선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급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급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외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완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직접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관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괴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범원이 손해발생시부터 관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관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기원손해금을 무답하라고 신경되었다.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